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12 선고 2022가단12686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(시효연장)]

전 문

원 고 A단체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7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5,508,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. 2. 8.부터 2002. 8. 21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2012. 4. 4.까지는 연 25%의, 그 다음날부터 2022. 5. 12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신동호

별지